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693 호 2003. 1. 6. (월)

선	기 관 의 장
람	

경 상 북 도

■ 조 레

-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제2748호) 2
-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749호) 3
-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750호) 5
-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제2751호) 6
-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제2752호) 9
-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제2753호) 25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754호) 27
-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제2755호) 27

■ 고 시

- 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제2003-10호) 29

■ 공 고

-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공고(제2003-3호) 30

시 군

■ 공 고

- 전문건설업등록공고(포항시공고제2002-705호) 31

회								
람								

- 신조공인공고(경주시공고제2002-992호) 31
- 전문건설업등록공고(김천시공고제2002-831호) 32
-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김천시공고제2002-832호) 33
- 신조및폐기공인공고(경산시공고제2002-591호) 33

시 군 소 방 서

■ 공 고

- 소방시설공사업변경등록업체공고(경주소방서공고제2002-35호) 34
-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문경소방서공고제2002-4호) 35

기 타

■ 공 고

- 도로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2-379호) 35
- 도로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2-380호) 36

경 상 북 도

조 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48호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을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령과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3월부터 시행중인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전년도 12.31.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49호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5호내지6호를 8호내지9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내지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사업

6. 관광지 및 관광단지, 리조트, 휴게소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임원이 임명당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판명될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

나. 공사의 사업영역에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관광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 등을 추가함

다. 경영평가 실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라. 결산완료시기를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0호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병원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호”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중 “3월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병원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와 결산 시기를 조정하고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공사의 임원이 임명당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판명될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
 - 나. 결산완료시기를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함
 - 다. 경영평가 실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1호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추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위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8인 이내에서 7인으로 조정함

- 나.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함
- 다. 당해 공사의 임·직원 및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 포함)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라. 위원회 개회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변경 함
- 마.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

경상북도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2호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

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게시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은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 및 계단
8. 그 밖의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 · 종류 · 색깔 ·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과 영자 · 한자 등 외국어 1개이상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으로 한다.

- ② 시장 ·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 · 군의 시장 ·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제외한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취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 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이용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쪽(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의 시장·군수가 주거환경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도정 홍보내용은 도지사, 시장·군정 홍보내용은 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규격·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도시업무 담당과장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도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도소위원회는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도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도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도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개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도위원회에서 도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

나. 기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전

② 도위원회 또는 도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전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도위원회 및 도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기타 시장·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 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게시판 또는 당해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권한위임사항 (제25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가림간판규격의 설정	영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제6항
2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	법 제9조제1항, 영 제38조제6호, 조례 제22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류 종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격 규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내 사 용				
검 의 사 건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및 ○○시·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뒷면>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 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 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동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동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 후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차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제24조제3항)

①일련 번호	②광고물 종류	③표시 내용	④수 량	⑤보관 연월일	⑥보관 장소	⑦위반 장소· 위치	⑧담당 (취급) 자	⑨비고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1. 개정사유

가. 옥외광고물관리의 「허가·신고권」과 「과태료부과」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 시장·군수로 이관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신설과

도에서 → 시·군으로 사무이양된 사항은 도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위임 또는 이양된 업무 및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일부 보완·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 : 14건

- 벽면에 광선 사용금지 → 벽면에 빛이나 광선을 사용금지
- 공연간판의 벽면이용간판 허용 → 벽면이용·지주이용간판 허용
- 전기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신설 → 주거환경침해지역은 표시제한 등

나. 시행령으로 환원 : 2건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자동차, 열차의 외부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 등
- 광고업자 영업정지등의 처분
 - －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 등

다. 도 → 시·군으로 업무이양 : 11건

- 광고물의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과태료부과기준 등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3호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제6장 제22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 제26조 내지 제33조”를 “제5장 제17조 내지 제24조”로 하고, “제8장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제6장 제25조 내지 제28조”로 하며, “제9장 제38조”를 “제7장 제29조”로 한다.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과 이를 감정·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을 종전에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처리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종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나.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경상북도미술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 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함.
- 다. 종전 조례의 삭제된 장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의 용어는 변동 없이 장과 조만 개정하였음.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4호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도립예술단원 연령제한 폐지와 도립예술단의 지휘자 위촉기간을 명확히 하여 도립예술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립예술단원과 직원의 위촉연령을 만 61세로 하던 것을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립예술단원 연령제한 폐지를 심의·확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 .

나. 도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5호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3.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전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②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분의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12조제1항중 “주택과장”을 “주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법 '00.1.28, '01.1.16, 영 '00.6.27, 시행규칙 '00.7.4) 및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시행('00.7.1)됨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고,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규정을 신설함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함
- 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도시설계 관련 심의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전 의견제시 사항으로 대체함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3-10호

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농림부 승인 및 도 정정)에 대하여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가. 경상북도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77,915.3ha (증36.3ha)

- 농업진흥구역 : 141,366.6ha (감 5.4ha)
- 농업보호구역 : 36,548.7ha (증 41.7ha)

2. 농업진흥지역 변경내역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 수	면 적	필 수	면 적	필 수	면 적	필 수	면 적
경상북도	1,302,193	177,915.3	1,032,328	141,366.6	269,865	36,548.7	330	36.3
경 주 시	123,789	14,197.7	83,401	9,984.9	40,388	4,212.8	△115	△11.1
영 주 시	42,763	7,170.7	37,870	6,267.4	4,893	903.3	27	4.5
상 주 시	116,018	18,639.8	105,426	16,878.5	10,592	1,761.3	△52	△3.5
경 산 시	67,794	7,236.5	46,713	4,988	21,081	2,248.5	470	46.4

3.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4.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시·군청(농지관리담당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3-3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일
감 리 업	경북(종합) 1-20호	(주)신환건축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박 래 동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4-12	2002. 12. 30

2003. 1. 6.

경 상 북 도 지 사

시 군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02-70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 1. 6.

포 항 시 장

1. 등록일자 : 2002. 12. 27

2. 전문건설업 등록 내역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겸업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경북포항2002-27-3-12)	거 창	노 후 태	포항시 북구	
난방시공업 제2종(경북포항2002-28-2-27)	종합설비		대신동 73-21	

경주시 공고 제2002-992호

신 조 공 인 공 고

경주시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조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경 주 시 장

1. 신조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사 용 개 시 일	비 고
경주시관서 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2003. 1. 1 09:00	

김천시 공고 제2002-831호

전 문 건 설 업 등 록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문건설업 등록내역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주)감문건설	김 영 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김 천 2002-10-28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679-7

2. 등록일자 : 2002. 12. 30.

2003. 1. 6.

김 천 시 장

김천시 공고 제2002-832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내역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말 소 사 유
(주)창훈건설 석창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청도2000-13-4)	김천시 부곡동 582-20	자 진 반 납
(주)정원석재건설 이호녕	석공사업 (04-40)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1169	"

2. 말소일자 : 2002. 12. 30.

2003. 1. 6.

김 천 시 장

경산시 공고 제2002-591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경산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국비 회계직 공무원의 전환에 따른 폐기 및 신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경 산 시 장

1. 사 유 : 국비 회계관직공무원의 전환에 따른 폐기 및 신조공인 등록

2. 공인 사용(폐기)일시 : 2003. 1. 1

3. 공인인영

신조공인명	인 영	세기공인명	인 영
경산시관서 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경산시일 상경비출 납공무원인	

시군소방서

공 고

경주소방서 공고 제2002-35호

소방시설공사업 변경등록업체 공고

소방업 제5조 및 동업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변경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경 주 소 방 서 장

1. 업제명 및 대표자 : (주)국제건설, 추용엽
2. 등록번호 : 경주 제98-2호
3. 소재지 : 경주시 성전동 715-5번지
4. 업 증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보조기술 인력변경	추병수(*****)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99201040613Q)	권미경(*****) - 소방설비기사 1급(전기) (98201040306H) - 소방설비기사 1급(기계) (97203040402T)	2002 12. 27

6. 신고일자 : 2002. 12. 27

문경소방서 공고 제2002-4호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 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문 경 소 방 서 장

1. 등록사항

대상명 \ 구분	영업소 소재지	대 표 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및 분야
임 전 사	문경시 흥덕동 225-29번지	장우덕(***** -*****)	제문경 2002-3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2. 등록일자 : 2002. 12. 30

기 타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2-379호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부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까지(L=4.17km)

4. 사용폐지구간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부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까지(L=4.60km)
5. 중요경과지 : 경북 청도군 풍각면
6. 전용구간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부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까지(L=4.17km)
7. 중용구간 : -
8. 개시일시 : 2003년 1월 1일
9. 비 고 : 국도 20호선 풍각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신설국도 사용을 개시
 함과 동시에 기존 2차로 국도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2-380호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원군 대합면 등지리 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까지(L=5.4km)
4. 사용폐지구간 : 경남 창원군 대합면 등지리 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까지(L=6.8km)
5. 중요경과지 : 경남 창원군 대합면
6. 전용구간 : 경남 창원군 대합면 등지리 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까지(L=5.4km)
7. 중용구간 : -
8. 개시 및 폐지일 : 2003년 1월 1일
9. 비 고 : 국도 5호선 성산~유가간(성산~구지)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준공에
따라 신설국도 사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기존 2차로 국도의 사용을 폐지함.